

○ ○ ○ 검 찰 청

우편번호/ 주소 전화/ 팩스/

등록번호

수 신: ○○○장

발 신: ○○○검찰청검사장대리

검 사:

인

제 목: 공무원 등 고소·고발사건 결정결과통보

귀 기관 소속 직원 에 대한 사건이 다음과 같이 결정되었으므로, 「국가공무원법」 제83조제3항(「지방공무원법」 제73조제3항, 「군인사법」 제59조의3제1항, 「사립학교법」 제66조의3제1항,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53조의2, 「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·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 제35조의2, 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」 제37조, 「지방공기업법」 제80조의2,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34조의2)에 따라 통보합니다.

사	건	번	호	년		형제	호
피 고 소 (피 고 발) 인				성 명			
				주민등록번호			
				소속 및 직위			
결	정	일	자	죄 명		결 정 내 용	
	.	.	.				
	.	.	.				
	.	.	.				
	.	.	.				
	.	.	.				
	.	.	.				
	.	.	.				
피 고 소 (피 고 발) 사실 요지							
비 고				귀 기관 소속 직원에 대한 사건이 위와 같이 결정되었으므로 위 조항에 따라 통보하오니 적절히 조치하시고 그 결과를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		